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94
----------	------

발의연월일 : 2024. 10. 15.

발의자 : 김위상 · 김선교 · 우재준  
서일준 · 김형동 · 박성훈  
송언석 · 김소희 · 고동진  
김승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 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 · 제43조”를 “제38조 · 제39조제2항 ·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 · 군 · 구청장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위이전의 상태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5조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9조, 제95조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u>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위 이전의 상태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p>
<u>② (생 략)</u>	<p><u>제95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1. <u>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u>	<p><u>제95조(별 칙) -----</u> ----- ----- -----.</p>
2. 삭 제	<p><u>&lt;삭 제&gt;</u></p>
3. ~ 5. (생 략)	<p><u>3. ~ 5. (현행과 같음)</u></p>
6. <u>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 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u>	<p><u>&lt;삭 제&gt;</u></p>
7. 삭 제	<p><u>8. · 9. (현행과 같음)</u></p>
8. · 9. (생 략)	<p><u>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u></p>
10. <u>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u>	<p><u>제96조(별 칙) -----</u> ----- ----- -----.</p>
제96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u>1. ~ 6. (현행과 같음)</u></p>

7. 삭 제

8.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

위를 한 자

8.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